

고 시

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9-302호

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경인지방우정청장

□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

○ 지정 해지내역

별정국	관할 우체국	피지정인	별정우체국 위치	지정해지 사 유
인천계양1동 우체국	인천계양 우체국	최달현	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 4 (장기동)	피지정인의 지정해지 신청

○ 지정 해지일자 : 2019. 12. 31.